

음주운전

김 영 민 <교통신문사 위원>

연간 교통사고사망자 1만명을 이미 88년에 넘어선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동차 2백만대 시대에 나타나는 교통체증, 주차난, 부족한 도로, 무질서한 도로주행 등으로 시급한 처방을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자기운전자의 급격한 증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떤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도 운전자 스스로의 경각심 없이는 무색한 것이기에 더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지난 89년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무려 2만6천2백55건. 88년보다 77.6%가 증가한 놀라운 숫자다. 치안본부발표로는 이중 1천2백35명이 구속되었고 8천4명이 면허 취소가 되었다. 음주운전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높은 치사율과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점과 아울러 이같이 숫적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심각성이 행여 교통법이나 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야기된 점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교통요건이 비슷한 일본의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함)을 간략하게나마 비교·분석해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에 따른 신체변화를 알아보자.

음주운전의 의미규정

우리나라 도교법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도교법 제65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술끼를 띠고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정령(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일정기준치(혈액 1ml당 또는 호흡 1당 0.25mg 이상) 이상으로 정해 시행해 오다가 음주운전을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지극히 높은 악질적인 위험행위로 간주해 1970년 5월부터 법률 제86호에 의거해 술끼를 띤 운전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즉, 이전 규정이 일정한도 이하 정도라면 음주하는 것은 용인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지 말자'를 널리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자제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콜농도의 정도여하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술끼를 띤'이라 함은 '신체 내에 통상 보유하게 되는 정도 이상의 알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안색·호흡·안동 등 외관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주류 뿐 아니라 식용지게미 따위로 호흡시 약간의 알콜냄새가 난다 할 지라도 '술끼를 띤 것'이 된다.

또한 동 조에 제2항을 신설해 '술끼 띤 운전자의 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선 단지 운전자 혼자만이 아닌 운전자를 둘러싼 사회환경 전체가 음주운전 방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음주를 권유한다'함은 상대방의 요구유무에 관계없이 술자리를 함께 한 자를 포함, 음식점업자 등도 모두 포함한다. 단, 이 항에서는 음주 권유를 금지하는 하지만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 이른바 훈시규정으로 삼고 행정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

음주여부에 대한 측정불응시 일본에선 오로지 벌금형에만 처하나 우리나라에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칙을 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준치에 관계없이 술끼를 가진 상태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세분화했다.

일본에서는 교통위반시 각 위반 사례별로 점수제를 두어 위반시 15점이상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술끼를 띤 상태에서의 기준속도 초과(25-50km/h)는 9점을 벌점으로 하며 ② 술끼를 띤 상태에서의 기준속도 초과(25km/h 미만)는 7점을 ③ 단순 술끼를 띤 운전시엔 6점을 과하고 있다. 즉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기본벌점 2점에 덧붙여 음주상태가 적발되면 추가로 위와 같이 음주정도에 따른 추가벌점이 합산된다. 단, 이때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술끼를 띤 운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차량의 운전이 다른 차량에 미치는 위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알콜농도별 주취시의 증상

알콜의 혈중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맥주의 경우 5%, 포도주 15%, 소주 25%, 위스키 43% 정도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알콜이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켜 운전애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술을 마신후엔 시력이 떨어지므로 동체시력장애가 일어나 시야가 좁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개 밤에 이루어져 시력은 더욱 떨어진다. 신체사지 또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작과 판단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술을 먹지 않은 운전자는 제동반동작을 0.75초내에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자는 1.2초가 걸린다. 신체평균감각이 없어 질 뿐 아니라 손아귀힘이 약해져 핸들을 놓치기도 하며 피로와 졸음이 몰려 잠들었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동경대학 의학부의 감정서에 따라 혈중농도 및 호흡농도로 구분해 주취시의 증상을 구분해보면 표와 같다. ㉞

	혈중 농도 (%)	혈중 농도 (mg/ml)	호흡 농도 (ml/l)	증 상
1도 (미취)	0.05 ~ 0.15	0.5 ~ 1.5	0.25 ~ 0.75	억제력이 없어져 명랑해지고 판단력이 빨라진다. 따라서 실수도 나온다. 피부 특히 안면, 목의 피부가 충혈로 붉어지고 운동과다로 침착성을 잃게 된다. 이 정도에서라면 본인으로서 오히려 능력이 증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엄격히 조사하면 운동실조와 작업능력감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일 때의 반응시간은 정상시의 2배, 0.10%일 때는 4배가 된다.
2도 (경취)	0.16 ~ 0.25	1.6 ~ 2.5	0.76 ~ 1.25	자신이 술에 취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불쾌감을 수반하지 않은 현기증이 나타나고, 매우 쾌활하고 기분좋은 상태가 되어 운동실조임을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비틀거리게 된다. 언어는 어느 정도 불명료하고 생각을 제멋대로하여 화제가 차차 달라진다. 감각 특히 통증에 둔감하고 손에 쥌 것을 놓치기 쉽고 상처입은 것을 모른다. 또한 주의가 산만해 판단능력이 둔해진다. 이때 부터는 절대운전해선 안된다.
3도 (심취)	0.26 ~ 0.35	2.6 ~ 3.5	1.26 ~ 1.75	운동실조가 심해 보행이 곤란하게 되고 언어사용이 완전 불명료하다. 제반 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마비상태에 빠져 의식 또한 차차 불명료해진다.
4도 (이취)	0.36 ~ 0.45	3.6 ~ 4.5	1.76 ~ 2.25	주위가 빙빙 도는 것 같아지고 장소분간이 어려워 아무 곳이나 쓰러져 혼취상태가 된다. 근육의 힘이 전혀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게 된다. 호흡은 완만하고 체온도 저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손톱이나 입술 등의 말단부분에 피가 맺혀 검푸르게 보이게 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망하게 된다.